제269회대구광역시의회(임시회)

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차(부록)

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

【검토보고서】

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검토경과

○ 제안일자 : 2019년 9월 6일

○ 발 의 자 : 전경원·김동식·김원규·김재우·김지만·송영헌·이만규·이시복·이태손·황순자 의원

○ 회부일자 : 2019년 9월 9일

2. 제안이유

○ 건축법령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 중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물의 불법 사항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,

○ 이행강제금의 운영에 있어 시민들의 생활안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경될 수 있도록 하고,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의 침해가

상대적으로 큰 경우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가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한편,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,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코자 조례의 개정을 제안함.

3. 주요내용

○ 건축법(이하 "법")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정비하고, 법 개정에 따라 근거가 소멸된 이행강제금의 완화횟수를 삭제함.

(안 제43조제1항)

○ 재난·재해의 피해에 대한 긴급조치를 위해 부득이 발생한 위반사항과 외기에 노출된 옥외계단의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해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등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43조제3항)

○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상위법령에서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, 보다 엄격한 행정적 제재를 통해 공익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된 경우에도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함. (안 제43조제4항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의 개정안은 근거 법령인 「건축법」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, 부과 횟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,

○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감경하고,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가중 규정 신설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이행강제금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지며.

○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횟수 규정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한 것임.

○ 또한, 재난·재해의 피해에 대한 긴급 조치를 위해 부득이 발생한 위반사항과 옥외계단의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해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은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시의 적절한 조치로 보여짐.

○ 특히,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조성된 도심지의 다중이용시설 등, 일정조건의 건축물에 부속된 공용의 소규모 휴식시설인 공개공지가 상시 개방되어 있어야 함에도 소유주의 관리 소홀, 출입 폐쇄,

주차장 및 영업장소로 이용되는 등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고 있어 공개공지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.

○ 따라서, 공개공지를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가중함으로써 공개공지의 공공성 훼손, 경관저해, 보행공간 불편야기 등 관리소홀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민에게는 휴식공간을 되돌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□ 이상으로, **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**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